

7 가산점 평정(승진규정 제41조)

-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(공통가산점 관련) 및 제5항(선택가산점 관련)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,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(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,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.
(단, 경력평정에 인정하는 휴직기간일지라도 가산점 평정에서는 그 경력 기간을 제외함)
-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.

공통가산점

1. 연구·시범·실험학교 근무 경력(1.00점 만점)(2022.4.1.부터 만점 축소 시행)

-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(시범·실험학교 포함)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
- 1월마다 0.018점(1개월 미만은 일 0.0006점)
- 교육부장관 지정은 2010.02.28. 종료

2.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(0.50점 만점)(2022.4.1.부터 만점 축소 시행)

- 1월마다 0.015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5점)

3.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(1.00점 만점)

- 학점화로 인정된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, 1학점당 0.02점, 연도별 0.08점까지 인정
-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은 당해 연도 연수 60시간까지만 인정(연수 종료일이 기준일)
-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(동일연수 포함)는 3년 이내 중복이수 할 수 없음 (예 : 성교육과 성상담)
(교직 81840-1873, 2000.06.13., 교직 81840-141, 2001.01.17.)
-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,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(45시간)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없음(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7호, 2012.06.08., 교육부예규 제12호, 2014.04.25.)

※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 : '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(조직 및 인사제도 운영)'를 감사한 후 2013.12.31.자 평정부터 하나의 직무연수로 '직무연수성적 평정'과 공통가산점의 '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'으로 중복평정 할 수 없도록 조치함(교육부, 교원정책과-1766, 2013.06.)

※ 2012.12.31.자 평정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중 대학원 학위 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하지 않음(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-537, 2013.01.11.)

※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(교육부예규 제30호, 2016.12.30.) 부칙 제2조(자격·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)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함.